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박영서 의원 외 23명)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
----------	-----

발의연월일 : 2019. 4. 12.

발 의 자 : 박영서 · 임미애 · 김상조
박미경 · 배한철 · 김봉교
박창석 · 박영환 · 윤승오
김시환 · 나기보 · 이재도
남용대 · 윤창욱 · 박차양
이종열 · 남진복 · 고우현
김대일 · 홍정근 · 김하수
김희수 · 박용선 · 박현국
의원(24명)

찬 성 자 : (-)명

1. 개정이유

-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을 반영하여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저보험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의2)

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준을 부과 금액 1만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규정함(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붙임(의견 반영)
- 규제심사 : 붙임
- 부패영향평가 : 붙임
- 해당부서 검토의견 : 붙임
- 비용추계서 : 붙임

7. 참고사항

- 발의 및 찬성의원 서명 명부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부과금액을 말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월 10,000원 미만”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17. 4. 18>

1. 보수월액보험료 :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을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부 칙

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가 종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보다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 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을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 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

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 3. 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이 영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각각의 달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등급이 34 등급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

까지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자격 변동일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3.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단이 해당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날

[별표 4] <개정 2018. 3. 6.>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의 표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1), 2)의 합산액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기본공제액	1), 2)의 합산액 전액	850만원	500만원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중 500만원. 다만,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전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2	120 초과 ~ 140 이하	9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57	11,200 초과 ~ 11,900 이하	3,280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58	11,900 초과 ~ 12,600 이하	3,479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59	12,600 초과 ~ 13,400 이하	3,692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60	13,400 초과 ~ 14,200 이하	3,919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61	14,200 초과 ~ 15,000 이하	4,146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62	15,000 초과 ~ 15,800 이하	4,373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63	15,800 초과 ~ 16,600 이하	4,600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64	16,600 초과 ~ 17,400 이하	4,827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65	17,400 초과 ~ 18,300 이하	5,069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66	18,300 초과 ~ 19,200 이하	5,324
18	1,000 초과 ~ 1,100 이하	507	67	19,200 초과 ~ 20,100 이하	5,580
19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68	20,100 초과 ~ 21,100 이하	5,850
20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69	21,100 초과 ~ 22,100 이하	6,134
21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	6,432
22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23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24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25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26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27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28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29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30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31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
32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8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36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
37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
38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
39	3,860 초과 ~ 4,100 이하	1,130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
40	4,100 초과 ~ 4,350 이하	1,200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
41	4,350 초과 ~ 4,610 이하	1,272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
42	4,610 초과 ~ 4,890 이하	1,349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	30,029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97	114,000 초과	32,372
49	6,960 초과 ~ 7,380 이하	2,036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액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2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3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79	63	48
6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7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09	87	65
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55	124	93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액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9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30	104	78
1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86	149	111
11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2등급 및 3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365,52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182,76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8,02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550원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31.>

부 칙 <제2018-312호, 2018. 12. 31.>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3호)

제1조(목적)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액 적용대상)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험료 한시적 감액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각각의 달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이 34등급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속하는 사람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같은 법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제3조(세대 구성 변화시 감액 기준) 2개 이상의 지역가입자 세대가 동일 세대로 합가, 편입하는 등(이하 “합가등”이라 한다)의 사유로 보험료 감액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이 달라진 경우 감액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의 지역가입자 세대의 합가등이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을 감액한다.
 - 가. 세대 구성이 변화하기 전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
 - 나. 세대 구성이 변화한 후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에서 세대 구성이 변화하기 전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세대간 합가등이 발생한 경우,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합가등이 발생한 경우 : 세대 구성이 변화한 후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세대 구성의 변화로 인해 지역가입자 세대가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료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세대간 합가등이 발생한 경우 : 세대 구성이 변화한 후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산출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합가등이 발생한 경우 : 세대 구성이 변화한 후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에서 세대 구성이 변화하기 전 보험료 감액이 적용되지 않던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8-63호, 2018. 3. 30.>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부서 협의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사회복지과	제2조	<p><문장 수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부과금액이 부분을 삭제하면 기준이 되는 금액이 없어지게 되는바, 보험료 부과금액이 부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함. - 각 호의 어느 하나 부분도 유지 필요(각각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세대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p>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각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월 10,000원 미만”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p>
	제6조	<p><문장 수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호의 어느 하나 부분 유지 필요(각각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p>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p>
	부칙	<p><문장 수정 필요></p> <p>「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결국 보험료 부과금액은 이 고시를 반영하여 산정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산정되는 보험료 부과금액이</p>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p>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임에도 한시적 감액 기준이 적용되는 자라고 하여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 제외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 등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p> <p>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부칙 제2조를 두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한 경우에는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필요(안 부칙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감액기준이 적용되는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당연한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서 적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아울러 해당 고시의 적용 시기가 연장될 수도 있는바, 2022년 7월 1일로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2조(적용례)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3호를 말한다)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이 적용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감액 기준이 적용되는 때 까지는 제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조(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div> <p>한편, 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와 시·군이 같은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조례와 같이 개정하는 부분(기준 변경 및 부칙 제2조· 제3조의 내용도 포함)에 대해서는 23개 시·군과 협의할 필요가 있고, 이번 개정과 같은 내용으로 협의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23개 시·군도 이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각각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한바, 이 조례의 시행일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치(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임.</p>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 구 열
입안주무부서	의원발의	통 보 (조 치) 일	2019. 4. 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체재규정의 적정성	X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X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X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X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개성	X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4 해당부서 의견 (사회복지과)

□ 의견

- 2018년 1단계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후 지원예산액이 연 10억원 (17억 → 27억) 증가하였으며,
- 향후 조례개정으로 지원대상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적용시 1단계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전 대비 연 3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2단계(2022년 7월) 개정시 소요예산 산출이 불가하지만 30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 및 시군 예산부담이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조례가 제정(10,000원 미만세대 지원)되어 시행되고 있는 전국 7개 시도에서도 최저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개정 계획이 없고,
- 특히, 2단계 개편(2022년 7월)에 따른 예산소요액 산출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현행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경감조치로 2022년 6월까지 유예함으로 기존 지원자는 계속 지원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은 한시적 경감기준 적용기간(유예기간)이 끝나는 2단계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전인 2022년 경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2조 :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액을 월 10,000원 미만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로 개정함에 따라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으로 1차년도(2020년), 2차년도(2021년), 3차년도(2022년 6월 말) 매년 보험료 4.5%정도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용추계

※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편되지만, 비용추계 산출 불가(건강보험공단 자료추출 불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	3,798,000	3,968,910	2,073,755	비용추계불가		9,840,665
□ 총 비용		3,798,000	3,968,910	2,073,755			9,840,66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도비	일반회계	1,899,000	1,984,455	1,036,878	비용추계불가		4,920,333
시.군비		1,899,000	1,984,455	1,036,877			4,920,332
합계		3,798,000	3,968,910	2,073,755			9,840,665

5. 부대의견

- 조례 일부개정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도비 및 시군비가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 상

- 안 제2조(지원대상)

나. 비용추계 방법

-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액을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기준으로 추계 비용 작성

다. 비용추계시 상세내역(2020년)

- 상세내역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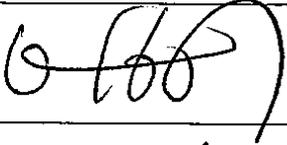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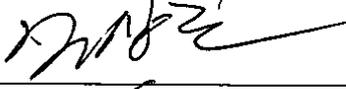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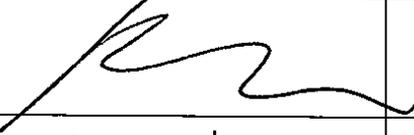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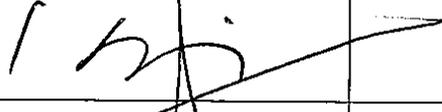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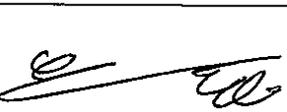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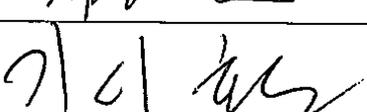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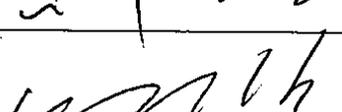
사 업 명	계			산출내역
	계	도비	시군비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	3,798,000	1,899,000	1,899,000	82×46,317세대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구 분	내 용	비 고
조 례 명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주요내용 (비용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하한액 조정(제2조) 	
담당부서 비용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9,840백만원(도비 4,920, 시군비 4,920) -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으로 함 * 2022년 7월부터 최저보험료 개편예정, 산출불가 - 지원액을 월 10,000원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안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2017.4.18.)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에 해당하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원대상 기준을 월 10,000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지원구간을 확대하여 시행할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9,840백만원(도비 4,920)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국내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세수 감소,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비 매칭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3호) 제4조에 따르면,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조치유예기한을 2022년 6월30일까지로 두고있어,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시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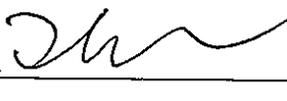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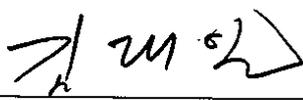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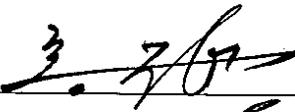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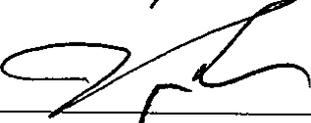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명	서명 및 날인	비 고
박 영서		
임 미애		
김 상조		
이성미		
이관철		
김 용근		
박 창석		
박 영환		
윤동호		
김다현		
나기빈		
이재돈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명	서명 및 날인	비 고
이민호		
이창우		
백병호		
이종열		
이진우		
고우현		
김대일		
홍정근		
김하수		
김희우		
박용선		
박희우		